

제19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 조례안상정 (조례 10건)

거창군

#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3 ~ 50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
2013 ~ 5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3 ~ 52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3 ~ 53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3 ~ 54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25
2013 ~ 55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	33
2013 ~ 5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2013 ~ 57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2013 ~ 58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2013 ~ 59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50
----------	-----------

제출연월일	2013. 6. 28.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3,487개 읍면동 중 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설치 지역 및 기능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 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 선정지역인 북상면에 군수가 설치하고,
- 협의업무,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함

### 나. 위원의 정수, 자격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함
-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군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자격이 없음

### 다.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지역·주민·직능대표별로 동일한 비율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위원이 40퍼센트가 넘도록 노력함

### 라. 위원 임기와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제17조)

-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예산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 할 수 있음

### 마. 유효기간 및 경과조치 규정을 둠(안 부칙)

-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북상면에 한정하여 2014년 7월 31일까지 적용함
-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재위촉하게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제29조  
나. 예산조치 : 국비(약 1억원)로 운영예정이며, 별도 군비 확보계획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6. 17. ~ 6. 27.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의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시범설치) ① 군수는 관할지역 중 북상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북상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의의 요구 등 필요할 경우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협의업무,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하고, 그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업무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읍·면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위탁업무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업무 :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업무로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노인돌보미 사업 등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

##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정수)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군의회 의원 및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
  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18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대표위원별로 공개모집 또는 심사 후 선출한다. 다만, 각 호의 비율은 동일하게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성위원이 40퍼센트가 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대표위원 :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하
  2. 주민대표위원 :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자 중 10명 이하
  3. 직능대표위원 :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자 중 10명 이하
-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자로 선정한다.

- ③ 제2항의 명부는 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명부에서 제1항 단서의 비율에 따라 후보순위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지역대표위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선정
  2.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자 중 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위촉
-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민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군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읍·면장 추천위원 3명
  2. 이장협의회 추천위원 3명
  3. 지역 대표 연합단체 및 기관 추천위원 3명
-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 ⑤ 선정위원회는 성·연령·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각 1명을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개최 10일전에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5조(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등)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제7조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에게 제1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 요구를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으며, 해촉 요구 발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4장 주민자치회의 지원 및 감독 등

제19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2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실시에 따른 유효기간)**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북상면에 한정하여 2014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적용례)**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고, 군수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재위촉한다.

#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주민자치회의 협의업무,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 수행

#### 나. 관련 조문

○ 제19조제1항 :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세출	국비		100					100
	군비							
	소계(a)		100					100
세입	국비		100					100
	군비							
	소계(b)							
총 비용(a-b)			0					0

### 3. 관련 의견

○ 북상면 주민자치회에 한하여 1년간 국비 약 100백만원 지원 예정

작성자 : 행정과장 정삼영



#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51
----------	-----------

제출연월일	2013. 6. 28 .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 이유

○ 「보건진료소 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11.12.16.)폐지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회기금에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이 중단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3.01.09.) 개정 내용을 근거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설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별표 3)

○ (현행) 간호직렬에 준하는 월 5만원

⇒ (개정) 월 25만원(활동장려금 20만원 + 의료업무수당 5만원)

나. 지급대상이 없는 장려수당 일부를 삭제함(안 제3조, 별표 4)

○ (현행) 분노·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개정)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함

##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 확보 54,0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5. 08. ~ 5. 27.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금 액	월 791,000원 이하	월 710,000원 이하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근무연수	등급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012,000원 이하	월 673,000원 이하	월 667,000원 이하	월 661,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006,000원 이하	월 661,000원 이하	월 656,000원 이하	월 650,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000,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995,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989,000원 이하				

비고: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고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월 250,000원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50,000원

##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요인 : 거창군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증액지급에 따른 공무원 보수(인건비) 추가 발생
- 관련 조문 : 제2조제3항

###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총 비용(a - b)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세출	군 비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소계(a)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세입							
	소계(b)						

### 3. 관련 의견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인건비 증가액 : 43,200천원
  - 보건진료직렬 15명 + 보건진료원(계약직) 3명  
(월 200,000원 × 18명 = 43,200천원)

행 정 과 장 정 삼 영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52
----------	-----------

제출연월일	2013. 6. 28.
제출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지원 관련 포괄적인 내용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제4호)

○ 그 밖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43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4. 23. ~ 5. 13.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립되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지원하고 육성”을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지원·육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훈련 및 양성을 위하여 <u>설립되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지원하고 육성</u>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지원·육성</u> ----- --</p>
<p>제3조(지원 등) ① 군수는 승강기산업 수요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한국폴리텍 VII대학 거창캠퍼스를 무상증여 조건에 따라 대학에 무상양여 한다.</p> <p>② 군수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라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강기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li> <li>2. 승강기산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개선사업</li> <li>3.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사업</li> <li>4. <u>그 밖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u></li> </ol> <p>③ 대학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산에 대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용 기본재산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3조(지원 등) ① ----- ----- ----- ----- ----- -----</p> <p>② ----- ----- ----- ----- ----- -----</p> <p style="text-align: right;">----- <u>범위에서</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li> <li>2. ----- -----</li> <li>3. ----- -----</li> </ol> <p>&lt;삭 제&gt;</p> <p>③ ----- ----- ----- ----- -----</p>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53
----------	-----------

제출연월일	2013. 6. 28.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체육시설 감면대상에 영유아 대상 행사와 수영장 사용 여성회원 중 가임여성의 경우를 신설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와 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6호)

- (1) 어린이 : 하한 연령 7세 이상 ⇒ 6세 이상
- (2) 영유아 규정 신설 : 6세 미만의 취학 전의 사람

#### 나.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함(안 제15조제2항제4항)

- (1) 사용료 30% 경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등 대상 행사 ⇒ 영유아 대상 행사 추가
- (2) 수영장 이용 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회원에 대하여 월 이용료의 10퍼센트 감면 규정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4. 22. ~ 5. 1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8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5조제2항 중 “어린이”를 “영유아, 어린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준용) ① (생략)</p> <p>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체육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u>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u>」를 준용한다.</p>	<p>제25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거창군 사무의 민간에 관한 조례</u>」 ----- -----</p>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조례 제4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 경 기



##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54
----------	-----------

제출연월일	2013. 6. 28.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을 위하여 공급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함(안 제5조)

(1) 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2) 본관 정압시설 설치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제8조)

○ 보조사업 선정·조정 및 협의 등을 위하여 10명 이내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다. 보조사업 수요조사서 및 중·장기계획 작성 제출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사업자는 매년 7월말까지 보조사업 수요조사서와 5개년 이상 중·장기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 라. 보조사업 선정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1) 사업자의 보조사업 수요조사서에 대한 위원회 상정 및 의결 선정

(2) 위원회 심의 의결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

#### 마. 보조금의 교부 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 제14조)

#### 바. 보조사업의 감독 및 제재에 관하여 정함(안 제15조·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19조의3
-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300백만원(2014년도 예산확보 예정)

나.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4. 22 ~ 5. 1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시가스와 관련한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시설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시설"이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의 재원)** 보조금은 군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이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시설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정압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지원 방법이나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 시행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6조(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 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가스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2. 도시가스 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4. 시민단체 대표 등

5.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속 임원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 하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사업 수요조사서 작성 제출)**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보조사업 수요조사서와 5개년 이상 중·장기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계획서
2. 사업계획서(공급구역도 및 계획 관망도 등 포함)
3. 보조금 산출 근거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②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요조사서를 작성할 때 대상사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수요조사서에 대하여 사업내용의 적정성,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확정과 함께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사업자는 제10조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계획서
2. 사업계획서(공급구역도 및 계획 관망도 등 포함)
3. 설계도면 및 내역서
4. 보조금 산출 근거자료(실투자비 기준)
5. 주민동의서(해당사업에 한함)
6. 토지사용 승낙서(해당사업에 한함)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제12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예산이나 법령의 범위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교부)** ①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도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관계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사업 시행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14조(별도 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의 결과(연 3억원 지원경우)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세대수	15,587	15,761	15,935	16,109	16,283	16,457
계량기전수	987	4,589	6,347	7,241	7,996	8,496
보급률(회사 투자)	6.3%	29.1%	39.8%	45.0%	49.1%	51.6%
세대수(보조금) 증가		432	864	1,296	1,728	2,160
누계 세대수		5,021	7,211	8,537	9,724	10,656
보급률 추정		31.9%	45.3%	53.0%	59.7%	64.8%
보급률 증가		2.8%	5.5%	8.0%	10.6%	13.2%
군민 연간 절감액		177	354	531	708	886
군민 누계 절감액		177	531	1,062	1,770	2,656

## II. 비용의 추계 상세내역

### ○ 추계의 전제

- 신청 구간 및 세대수, 공사비에 따라 보조금 금액이 일정하지 않음
- 100m(투자비 약 41,000천원, 공급관 + 인입공사) 수요가 30세대 기준으로 경제성 미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경우

(단위: 세대수, 천원)

수요가수	공급배관	시설분담금			감가상각비회수액	투자금액	경제성	군부담
		일반	수요가	계				
60	100M	4,944	12,864	17,808	23,192	41,000	0	0
	※ 100M당 60세대 공급시 경제성을 기준으로 경남도 승인							
30	100M	2,472	6,432	8,904	11,261	41,000	△20,835	20,835

※ 수요가별 296,800원 기준(부가세 별도)

### 2) 수요가별 지원금액

○ 20,835천원 ÷ 30세대 = 695천원/세대,

☞ 연간 3억원정도 지원할 경우 : 300,000천원 ÷ 695천원/세대 = 432세대)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55
----------	-----------

제출연월일	2013. 6. 28.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에 필요한 사항,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군민 복리향상은 물론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에너지관련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3조)
- 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다. 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제9조)
- 다. 공공·건물·수송부문 에너지 시책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 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관하여 정함(안 제12조)
- 마. 녹색건축물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13조)
- 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하여 정함(안 제14조)
- 아. 에너지절약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제8조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54조
-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 제25조

나. 예산조치 : 356백만원('13년도 본예산 156백만원, 추경 200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5. 14. ~ 6. 03.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 등 에너지자립도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패시브 하우스”란 단열이 매우 잘되어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 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을 말한다.
2. “액티브 하우스”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수동적(passive)인 패시브 하우스에 대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능동적(active)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제로에너지 하우스”란 패시브 요소기술 및 액티브 요소기술을 반영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에너지관련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2.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3. 지속가능하고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군민의 협력 유도
6.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군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7.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4조(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이하 “에너지자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10년 이상의 계획 기간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에너지 공급의 추이와 전망
2.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5. 녹색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
6.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이용 및 보급 지원
7.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8. 그 밖에 에너지자립계획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에너지자립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에너지자립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군수는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군 공보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설치) 군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건축조례」에 따른 거창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계획 및 시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신재생 에너지 이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지원 및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관련 중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에너지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 의회 의원

2. 에너지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협회 관계자

3. 군민 또는 지역주민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한 번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야별 에너지 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분야별 에너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관리
2.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에너지제품, 환경표시 인증제품의 사용
3.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진단

③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건축물을 신축·증축 및 개축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시공 권장
2.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등에게 친환경건축물 인증 권장
3. 공사 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게 녹색건축물에 대한 교육 실시, 녹색건축물 관련 업무지침 발간·배포

④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도시 및 교통, 각종 건설 계획 등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
2. 주차 수요관리 강화 및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 억제
3.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체계 마련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제11조(비전선언 등) ① 군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지가 포함된 에너지자립도시 비전선언(이하 “비전선언”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군·군민·지역주민단체·사업자·에너지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실천협약(이하 “실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전선언과 실천협약에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목표, 군과 군민·지역주민단체·사업자·에너지관련기관 등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③ 각 읍·면은 주민조직 대표, 직능단체 대표, 주민, 공공시설의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비전선언과 실천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요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녹색건축물 보급 및 지원)**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적용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으로 다음 각 호 행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등 설치(신축인 경우 포함)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증축·개축·용도변경·대수선·수선(창호·단열재·설비교체 등)
3. 전기·조명시스템 등으로 변경(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
4.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5.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6. 냉·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보일러, 냉·난방기기 등)
7.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8.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등에게 소요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공기업,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및 신규 주택을 녹색건축물(패시브하우스, 액티브하우스, 제로에너지 하우스, 생태건축물 단지 등)로 전환하거나 조성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군수는 제13조·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연 2회 에너지사용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에너지절약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에너지 절약문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을 위한 군민, 지역주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에 공적이 큰 군민, 사업자, 지역주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계획 수립
- 녹색건축물 구역 지정에 따른 일부 사업비 지원
-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나. 관련 조문

- 제9조(에너지 자립도시 계획) ③ 군수는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건물부문)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 중 일부 사업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재정지원 등)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총 비용(a - b)		356	386	386	386	386	1,900
세출	도 비	52	52	52	52	52	260
	군 비	304	334	334	334	334	1,640
	소계(a)	356	386	386	386	386	1,900
세입							
	소계(b)						

### 3. 관련 의견

-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부분 협력과 수요증가로 추계보다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 20,000천원 정도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매년 70개소 \* 4,972천원 \* 15% = 156,618천원
- 녹색건축물 지원  
2,120,000원/m<sup>2</sup> \* 82.5m<sup>2</sup> \* 8개소 \* 15% = 209,880천원  
(1개소당 26,235천원 정도)
- 에너지 절약 민간 홍보 및 교육 사업 : 20,000천원

작성자 : 경 제 과 양 호 일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56
----------	-----------

제출연월일	2013. 6. 28.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3.29), 같은 법 시행령(2011.10.10)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2012.8.1)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및 간판의 외국어 병기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제12조)

- (1)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로 판매시설, 숙박시설 예시
- (2) ‘11. 3. 29 법률 개정으로 관광지·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만 한글 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나.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안 제25조)

- 현재,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개설한 사이버교육(옥외광고종사자과정) 이수 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 신설(국무총리실 2010 규제과제)

### 다.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안 제26조)

- (1) 광고물 전수조사 후 양성화 조치 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편입된 경우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

### 라. ‘11. 10. 10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설

- (1)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안 제7조)
- (2)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8조)
- (3)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4. 18. ~ 5. 0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른 회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다른 회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블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군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 다.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선거구로 하는 군의회 의원
  2. 주민협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진행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③ 주민협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군수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주민협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

(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광고물 등에 대한 시상)** ① 군수는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우수한 광고물등을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광고물등을 설치 한 자
2. 우수한 광고물등 제작 업자
3.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인

② 제1항의 심사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세로 규격이 4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

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외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외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외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외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외의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외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정게시대외 관리업무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 지침을 시달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현수막의 게시기간 등)**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지정게시대외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10일 이내 한 번만 할 수 있다. 다만, 표시기간 종료일부터 10일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할 수 있다.

②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4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창군 체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④.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의 만료 시 까지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2조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p>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p> <p>1) 면적 5m<sup>2</sup>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m<sup>2</sup> 이하</li> <li>- 2.1m<sup>2</sup> 이상 3.0m<sup>2</sup> 이하</li> <li>- 3.1m<sup>2</sup> 이상 4.0m<sup>2</sup> 이하</li> <li>- 4.1m<sup>2</sup> 이상 5.0m<sup>2</sup> 미만</li> </ul> <p>2) 면적 5m<sup>2</sup> 이상 10m<sup>2</sup>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m<sup>2</sup> 이상 6.0m<sup>2</sup> 이하</li> <li>- 6.1m<sup>2</sup> 이상 7.0m<sup>2</sup> 이하</li> <li>- 7.1m<sup>2</sup> 이상 8.0m<sup>2</sup> 이하</li> <li>- 8.1m<sup>2</sup> 이상 9.0m<sup>2</sup> 이하</li> <li>- 9.1m<sup>2</sup> 이상 10.0m<sup>2</sup> 미만</li> </ul> <p>3) 면적 10m<sup>2</sup> 이상 20m<sup>2</sup>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m<sup>2</sup> 이상 12.0m<sup>2</sup> 이하</li> <li>- 12.1m<sup>2</sup> 이상 14.0m<sup>2</sup> 이하</li> <li>- 14.1m<sup>2</sup> 이상 16.0m<sup>2</sup> 이하</li> <li>- 16.1m<sup>2</sup> 이상 18.0m<sup>2</sup> 이하</li> <li>- 18.1m<sup>2</sup> 이상 20.0m<sup>2</sup> 미만</li> </ul> <p>4) 면적 20m<sup>2</sup> 이상</p>	<p>20만원</p> <p>25만원</p> <p>30만원</p> <p>40만원</p> <p>50만원</p> <p>60만원</p> <p>70만원</p> <p>80만원</p> <p>90만원</p> <p>100만원</p> <p>120만원</p> <p>140만원</p> <p>160만원</p> <p>180만원</p> <p>200만원+면적 20m<sup>2</sup>를 초과하는 면적의 1m<sup>2</sup>당 10만 원을 더한 금액 미만</p>
<p>나. 돌출간판</p> <p>1) 연면적 5m<sup>2</sup>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m<sup>2</sup> 이하</li> <li>- 2.1m<sup>2</sup> 이상 3.0m<sup>2</sup> 이하</li> <li>- 3.1m<sup>2</sup> 이상 4.0m<sup>2</sup> 이하</li> <li>- 4.1m<sup>2</sup> 이상 5.0m<sup>2</sup> 미만</li> </ul> <p>2) 연면적 5m<sup>2</sup> 이상 10m<sup>2</sup>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m<sup>2</sup> 이상 6.0m<sup>2</sup> 이하</li> <li>- 6.1m<sup>2</sup> 이상 7.0m<sup>2</sup> 이하</li> <li>- 7.1m<sup>2</sup> 이상 8.0m<sup>2</sup> 이하</li> </ul>	<p>20만원</p> <p>25만원</p> <p>30만원</p> <p>40만원</p> <p>50만원</p> <p>60만원</p> <p>70만원</p>

- 8.1m <sup>2</sup> 이상 9.0m <sup>2</sup> 이하	80만원
- 9.1m <sup>2</sup> 이상 10.0m <sup>2</sup> 미만	90만원
3) 연면적 10m <sup>2</sup> 이상 20m <sup>2</sup> 미만	
- 10.0m <sup>2</sup> 이상 12.0m <sup>2</sup> 이하	100만원
- 12.1m <sup>2</sup> 이상 14.0m <sup>2</sup> 이하	120만원
- 14.1m <sup>2</sup> 이상 16.0m <sup>2</sup> 이하	140만원
- 16.1m <sup>2</sup> 이상 18.0m <sup>2</sup> 이하	160만원
- 18.1m <sup>2</sup> 이상 20.0m <sup>2</sup>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20m <sup>2</sup> 이상	200만원+연면적 20m <sup>2</sup>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sup>2</sup> 당 10 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  
별론

1) 연면적 3m <sup>2</sup> 미만	
- 0.5m <sup>2</sup> 이하	30만원
- 0.6m <sup>2</sup> 이상 1.0m <sup>2</sup> 이하	33만원
- 1.1m <sup>2</sup> 이상 2.0m <sup>2</sup> 이하	38만원
- 2.1m <sup>2</sup> 이상 3.0m <sup>2</sup> 미만	45만원
2) 연면적 3m <sup>2</sup> 이상 5m <sup>2</sup> 미만	
- 3.0m <sup>2</sup> 이상 3.5m <sup>2</sup> 이하	50만원
- 3.6m <sup>2</sup> 이상 4.0m <sup>2</sup> 이하	60만원
- 4.1m <sup>2</sup> 이상 4.5m <sup>2</sup> 이하	80만원
- 4.6m <sup>2</sup> 이상 5.0m <sup>2</sup> 미만	90만원
3) 연면적 5m <sup>2</sup> 이상 10m <sup>2</sup> 미만	
- 5.0m <sup>2</sup> 이상 6.0m <sup>2</sup> 이하	100만원
- 6.1m <sup>2</sup> 이상 7.0m <sup>2</sup> 이하	120만원
- 7.1m <sup>2</sup> 이상 8.0m <sup>2</sup> 이하	140만원
- 8.1m <sup>2</sup> 이상 9.0m <sup>2</sup> 이하	160만원
- 9.1m <sup>2</sup> 이상 10.0m <sup>2</sup>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10m <sup>2</sup> 이상	200만원+연면적 20m <sup>2</sup>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sup>2</sup> 당 10 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  
드별론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

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m<sup>2</sup> 미만

- 2.0m<sup>2</sup> 이하 30만원
- 2.1m<sup>2</sup> 이상 3.0m<sup>2</sup> 이하 33만원
- 3.1m<sup>2</sup> 이상 4.0m<sup>2</sup> 이하 38만원
- 4.1m<sup>2</sup> 이상 5.0m<sup>2</sup> 미만 45만원

2) 연면적 5m<sup>2</sup> 이상 10m<sup>2</sup> 미만

- 5.0m<sup>2</sup> 이상 6.0m<sup>2</sup> 이하 50만원
- 6.1m<sup>2</sup> 이상 7.0m<sup>2</sup> 이하 60만원
- 7.1m<sup>2</sup> 이상 8.0m<sup>2</sup> 이하 70만원
- 8.1m<sup>2</sup> 이상 9.0m<sup>2</sup> 이하 80만원
- 9.1m<sup>2</sup> 이상 10.0m<sup>2</sup> 미만 90만원

3) 연면적 10m<sup>2</sup> 이상 20m<sup>2</sup> 미만

- 10.1m<sup>2</sup> 이상 12.0m<sup>2</sup> 이하 100만원
- 12.1m<sup>2</sup> 이상 14.0m<sup>2</sup> 이하 120만원
- 14.1m<sup>2</sup> 이상 16.0m<sup>2</sup> 이하 140만원
- 16.1m<sup>2</sup> 이상 18.0m<sup>2</sup> 이하 160만원
- 18.1m<sup>2</sup> 이상 20.0m<sup>2</sup>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20m<sup>2</sup> 이상 50m<sup>2</sup> 미만

- 20.0m<sup>2</sup> 이상 25.0m<sup>2</sup> 이하 200만원
- 25.1m<sup>2</sup> 이상 30.0m<sup>2</sup> 이하 230만원
- 30.1m<sup>2</sup> 이상 35.0m<sup>2</sup> 이하 240만원
- 35.1m<sup>2</sup> 이상 40.0m<sup>2</sup> 이하 250만원
- 40.1m<sup>2</sup> 이상 45.0m<sup>2</sup> 이하 260만원
- 45.1m<sup>2</sup> 이상 50.0m<sup>2</sup> 미만 280만원

5) 연면적 50m<sup>2</sup> 이상

300만원 + 연면적 50m<sup>2</sup>를 초과하는 면적의 1m<sup>2</sup>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m<sup>2</sup> 이하 30만원
- 연면적 6m<sup>2</sup> 이상 10m<sup>2</sup> 이하 40만원
- 연면적 11m<sup>2</sup> 이상 15m<sup>2</sup> 이하 50만원
- 연면적 16m<sup>2</sup> 이상 20m<sup>2</sup> 이하 60만원

- 연면적 21㎡ 이상	6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5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4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50만원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60만원
- 연면적 21㎡ 이상	7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10만원
- 1.0㎡ 이하	20만원
- 1.1㎡ 이상 2.0㎡ 이하	29만원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5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4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6조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2,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	
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2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1,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10,000원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3,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3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12,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2,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4,5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 · 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 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3,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5,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하. 벽보(1건)	2,500원
거. 전단(1건)	2,500원
너.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 ·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등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이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 · 사용자제 ·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6조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p>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이하</li> <li>- 0.6㎡ 이상 0.8㎡ 이하</li> <li>- 0.9㎡ 이상 1.0㎡ 미만</li> </ul>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이상 1.3㎡ 이하</li> <li>- 1.4㎡ 이상 1.6㎡ 이하</li> <li>- 1.7㎡ 이상 2.0㎡ 미만</li> </ul>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이상 2.3㎡ 이하</li> <li>- 2.4㎡ 이상 2.6㎡ 이하</li> <li>- 2.7㎡ 이상 3.0㎡ 미만</li> </ul> <p>라) 연면적 3㎡ 이상</p>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이하</li> <li>- 0.6㎡ 이상 0.8㎡ 이하</li> <li>- 0.9㎡ 이상 1.0㎡ 미만</li> </ul>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이상 1.3㎡ 이하</li> <li>- 1.4㎡ 이상 1.6㎡ 이하</li> <li>- 1.7㎡ 이상 2.0㎡ 미만</li> </ul>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이상 2.3㎡ 이하</li> </ul>	<p>법 제20조제1항제1호</p>	<p>12만원</p> <p>17만원</p> <p>25만원</p> <p>33만원</p> <p>42만원</p> <p>58만원</p> <p>67만원</p> <p>92만원</p> <p>117만원</p> <p>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7만원</p> <p>10만원</p> <p>13만원</p> <p>17만원</p> <p>25만원</p> <p>42만원</p> <p>50만원</p>

- 2.4㎡ 이상 2.6㎡ 이하	58만원
- 2.7㎡ 이상 3.0㎡ 미만	75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b>나. 현수막</b>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8만원
- 1.1㎡ 이상 2.0㎡ 이하	12만원
- 2.1㎡ 이상 3.0㎡ 미만	13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17만원
- 3.8㎡ 이상 4.4㎡ 이하	22만원
- 4.5㎡ 이상 5.0㎡ 미만	25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33만원
- 6.1㎡ 이상 8.0㎡ 이하	50만원
- 8.1㎡ 이상 10.0㎡ 미만	58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b>다. 벽보</b>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2천원
- 21장 이상	장당 33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3천원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50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3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67만원
라. 1년 이상		333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⑱ 변 경 사 항	⑲ 비 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변경)허가 번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별지 제2호서식]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거   창   군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  
인

[별지 제6호서식]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별지 제7호서식]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 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sup>2</sup>]

[별지 제8호서식]

###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련 번호	② 광고물 종류	③ 표시 내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별지 제9호서식]

##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변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sup>2</sup>]

[별지 제11호서식]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제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	----------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 20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인



제 호 <b>현수막 지정계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서</b>			
수 탁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업장 소재지			
⑥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계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거 창 군 수 <span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10px;">직인</span></p>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57
----------	-----------

제출일자	2013. 6. 28.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옥내급수설비 노후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도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수관 개량(갱생 및 교체) 공사비 지원
- 각종 행위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전부 감면
- 상수도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선납 조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

### 2. 주요내용

가. 표준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급수공사 신청 시 설계 수수료 납부 조항 삭제(안 제6조)

→ 설계 수수료를 급수공사비 산출시 포함시켜 함께 납부토록 함

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이용시설 수도요금 전부 감면  
(안 제37조)

라. 옥내 노후 급수설비 갱생 및 교체비용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40조)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사회복지시설, 단독·공동주택  
(100제곱미터 이하), 학교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마. 현행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13조, 제18조, 별표 5)

- (1) 급수공사비 분할 납부 대상 범위 확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계량기 설치 위치 선정 시 수용가와 협의
- (3) 급수도용 등 부정행위 사전차단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30만원->50만원)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안 제4조, 제2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21조·제38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나. 예산조치 : 2014년도 2천만원 예산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4. 05. ~ 4. 2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구(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세대이며,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며 독립된 취사생활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중 “다음의 3종으로”을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항을 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수용가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부수한다”을 “따른다”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도사용자 : 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감면

## 2.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 수도요금 100퍼센트 감면

제40조제2항 중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를 “옥내급수관의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4.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5. 초·중·고등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6조 중 “「수도법」 제71조2”를 “「수도법」 제71조”로 한다.

별표 5는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p> <p>&lt;신설&gt;</p>	<p>제2조(정의) -----</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10.-----</p> <p>-----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내)를 말한다.</p> <p>11. “가구(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세대이며,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며 독립된 취사생활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p>
<p>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p> <p>1. ~ 3. (생략)</p>	<p>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p> <p>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p> <p>④ ~ ⑤ (생략)</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② ~ ③ (현행 제4항·제5항과 같음)</p>
<p>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 ⑤ (생략)</p> <p>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p> <p>-----</p> <p>-----</p> <p>-----.</p>
<p>제18조(상수도의 사용) ① (생략)</p> <p>② 상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8조(상수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수용가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p>





[별표 5]

## 과태료 처분기준(제45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u>500,000원</u>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u>500,000원</u>
3.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 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0원)
4.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 시설		200,000원
6. 사설 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7. 정수처분 중인 상수도 계량기의 무단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8. 급수판매 금지		2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2항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옥내급수관의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 4.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찬 복



#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58
----------	-----------

제출일자	2013. 6. 28.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 시 위탁기간 연장조항 등을 삭제하여 위탁가능한 모든 업체에 기회를 제공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전면 위탁 관리함에 따라 읍·면장이 실시하던 시설 관리 및 점검 의무사항을 축소
- 「수도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관련지침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순화·정비함

## 2. 주요내용

- 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 시 위탁기간 연장조항 삭제  
(안 제22조)
- 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전면 위탁관리에 따른 읍·면장의 시설 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일부 축소
  - (1) 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 → 관리자(안 제4조, 제8조)
  - (2) 읍·면장 → 관리자(안 제7조)
- 다. 「수도법」 등의 개정에 따라 법률조문, 환경부 조례 개정요청사항 반영 및 관련지침 등에 의한 용어 정비
  - (1)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  
→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안 제1조)
  - (2)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안 제6조)
  - (3) 마을 신규입주세대에 수도설치 관련 입회비(마을발전기금) 요구 금지규정 신설(안 제14조)
  - (4)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마을상수도 → 소규모수도시설  
(안 제2조~제5조, 제7조, 제9조~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  
(안 제1조~제6조, 제8조~제9조, 제11조~제17조, 제19조, 제21조~제2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47조, 제55조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1,746백만원 반영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4. 5. ~ 4. 2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조례”를 “이 조례”로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란 「수도법」 제3조 제9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13의 2호의 규정에 의한”을 “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당해 지역의 군수”를 “군수”로, “당해지역의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로,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사용자대표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라 함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란 소규모수도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으로, “연계 하여”를 “연계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을 “관리자는”으로 “마을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관리”를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 관리”를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

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1에 의하여”를 “별표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의2”를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 관리규칙」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점검)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중 “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를 “제10조에 따른”으로 “재·보수”를 “개·보수”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읍·면장은”을 “관리자 및 읍·면장은”으로 한다.

제10조 중 “읍·면장은”을 “읍·면장 및 관리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폐지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수도법」 제 20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5조 규정에 의거”를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로,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마을상수도 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마을상수도”를 “소규모수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른”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징수할 때에는”로,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을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라”로,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제1항 중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를 “사용자”로,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를 “지역여건 및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의 대표자는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를 “대표자는 사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재한다”를 “주관한다”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협회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한다.

제20조 중 “마을상수도 협회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1조 중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를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마친 자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 중 “조례”를 “이 조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본문,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호·제2호, 제21조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중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과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u>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p> <p>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p> <p>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13의 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p> <p>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u>당해 지역의 군수를</u>,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u>당해지역의 사용자 대표 협의회</u>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u>사용자 대표 협의회가</u> 구성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마을이장을 관리자로 본다.</p> <p>4. “사용자”라 함은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p> <p>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u>-----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u>이 조례</u>----- -----<u>뜻은</u>-----.</p> <p>1. -----<u>란 「수도법」 제3조 제9호에 따른</u> -----.</p> <p>2. -----<u>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u> ----- -----.</p> <p>3. -----<u>란</u>----- <u>군수</u>----- -----<u>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u>----- -----<u>사용자대표협의회가</u> ----- -----.</p> <p>4. -----<u>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u>----- -----</p> <p>5. -----<u>란 소규모수도시설</u>----- ----- -----.</p>
<p>제3조(정비계획 수립) ① <u>군수는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u>군수가 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u></p>	<p>제3조(정비계획 수립) ① ----- <u>소규모수도시설</u>----- ----- ----- -----<u>소규모수도시설</u>----- -----.</p> <p>② ----- <u>제1항에 따른</u>----- <u>수립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u>-----</p>

현 행	개 정 안
<p>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u>연계 하여</u> 검토하여야 한다.</p> <p>제4조(시설의 관리) ① <u>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u>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u>마을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관리</u> 일체를 관장한다.</p> <p>② <u>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군수는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의 개·보수를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조(취수원 보호) ① 관리자는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u>별표1에 의하여</u>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는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u>수도법</u>」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u>상수원관리규칙</u>」 제23조의2, 「<u>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칙</u>」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군수는 <u>제1항에 의한</u> 수질검사결과를 <u>제16조의 규정에 의한</u> 협의회에</p>	<p>----- ----- ----- <u>연계하여</u> -----.</p> <p>제4조(시설의 관리) ① <u>관리자는</u> ----- ----- -----<u>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u> -----.</p> <p>② <u>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u>-----<u>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u> ----- -----<u>&lt;후단 삭제&gt;</u></p> <p>③ ----- <u>소규모수도시설</u>----- ----- -----.</p> <p>제5조(취수원 보호) ① -----<u>소규모수도시설</u>----- ----- -----<u>별표에 따라</u> ----- -----.</p> <p>② ----- <u>소규모수도시설</u> ----- -----.</p> <p>제6조(수질검사) ① ----- 「<u>수도법</u>」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u>상수원관리규칙</u>」 제25조,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군수는 <u>제1항에 따른</u> 수질검사 결과를 <u>제16조에 따른</u>-----</p>

현행	개정안
<p>통보하여야 한다.</p> <p>제7조(점검) ① 읍·면장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며, 그 내용을 관리자 및 군수에게 통보하고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해당 읍·면장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조(개선조치) ① 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읍·면장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재·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읍·면장이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및 군수에</p>	<p>-----.</p> <p>제7조(점검)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 ----- 제7조에 따른 ----- ----- ----. &lt;후단 삭제&gt;</p> <p>제9조(유지보수) ① ----- ----- 제10조에 따른 ----- ----- 소규모수도시설 ----- ----- 개·보수 ----- -----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 ----- -----.</p> <p>② ----- 소규모수도시설 ----- ----- ----- -----</p>

현행	개정안
<p>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해당 읍·면장은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의 개량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및 사고로 인하여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읍·면장</u>은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여 군수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 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u>아니하다</u>.</p> <p>② 군수가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5조 규정에 의거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3조(요금징수) ① 군수는 <u>마을상수도 시설</u>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p>	<p>-----</p> <p>③ 관리자 및 읍·면장은 <u>소규모수도시설</u>-----</p> <p>-----.</p> <p>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p> <p>----- <u>소규모수도시설</u>-----</p> <p>----- <u>소규모수도시설</u>-----</p> <p>----- <u>읍·면장 및 관리자</u>는 -----</p> <p>-----.</p> <p>제11조(시설의 폐지) ① -----</p> <p>----- <u>소규모수도시설</u> --폐지할 때 -----</p> <p>-----</p> <p>----- <u>아니한다</u>.</p> <p>② ----- <u>소규모수도시설</u> --폐지할 때 -----</p> <p>-----</p> <p>제12조(건강진단) -----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u>소규모수도시설</u>-----</p> <p>-----<u>사람에게</u>-----.</p> <p>제13조(요금징수) ① ----- <u>소규모수도시설</u>-----</p>

현행	개정안
<p>리하기 위하여 <u>마을상수도</u>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군수가 <u>제1항의 규정에 의거</u> 수도요금을 <u>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u>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u>」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p> <p>제14조(관리비용) ① 군수가 <u>제13조의 규정에 의한</u> 수도요금을 <u>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u>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u>범위 내에서</u>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조(구성) ① 협회회는 <u>마을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u>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u>지역 여건에 따라</u>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p> <p>② <u>협회회의 대표자는 마을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u> 중에서 선출한다.</p> <p>③ 대표자는 협회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u>주재한다</u>.</p> <p>④ (생략)</p> <p>제18조(기능) 협회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li> <li>2.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의 관리</li> </ol>	<p>-----<u>소규모수도시설</u>-----</p> <p>-----</p> <p>② ----- <u>제1항에 따른</u> ----- -----<u>징수할 때에는</u>-----</p> <p>----- 「<u>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u>」에 따른-----</p> <p>-----.</p> <p>제14조(관리비용) ① ----- <u>제13조에 따라</u> -----<u>징수하지 않는 지역은 소규모수도시설</u>-----</p> <p>----- <u>소규모수도시설</u> -----</p> <p>-----<u>범위에서</u>-----</p> <p>-----.</p> <p>② <u>소규모수도시설</u>-----</p> <p>-----</p> <p>----- <u>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u></p> <p>제17조(구성) ① -----<u>사용자</u>-----</p> <p>-----<u>지역여건 및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u></p> <p>② <u>대표자는 사용자</u>-----.</p> <p>③ -----</p> <p>----- <u>주관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기능)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소규모수도시설</u>-----</li> <li>2. <u>소규모수도시설</u>-----</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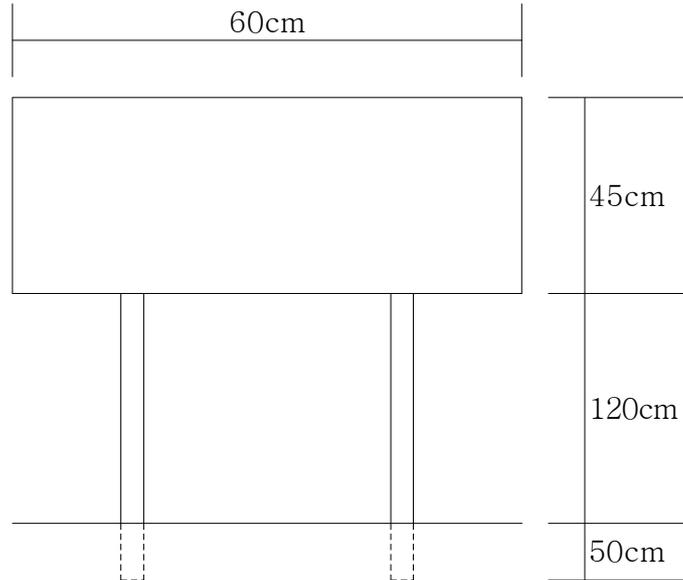
현행	개정안
<p>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 2. (생략) 3. <u>협회의 대표자</u>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p> <p>제20조(실비변상) 군수는 <u>마을상수도 협회의 대표자</u>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군수는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협회 대표자</u>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u>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u>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p> <p>제22조(관리위탁 및 대행업체 지정) ① 군수는 <u>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업체(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탁하게 할 때에는 <u>위탁관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u> ③ <u>위탁관리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득한 자로서 미리군수로부터 위탁관리업을 지정 받은 자로 한다.</u></p>	<p>----- 3.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제19조(개최) ① ----- <u>각호의 어느 하나</u>-----. 1. ~ 2. (현행과 같음) 3. <u>대표자</u>----- -- 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실비변상) -----<u>대표자</u>----- ----- -----<u>범위에서</u>----- ----- 제21조(교육) -----<u>대표자</u>----- ----- ----- -----<u>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u>-----.</p> <p>제22조(관리의 위탁) ① <u>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마친 자이어야 한다.</u> ③ <u>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업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위탁관리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탁한 시설에 대하여 위탁관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p> <p>⑥ 군수는 위탁관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인력 장비 기타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탁관리업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위탁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23조(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3조(규칙) 이 조례----- -----.</p>

[별표]

## ○○마을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 관련)

### 1. 규격



- 재질 및 두께 : 5mm 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 바탕색 : 흰색
- 글씨 : 청색

### 2. 내용문

####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수도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 시 연락처 :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940-8420)

거창군수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 관련)

관 리 번 호		거창군 제 호			내 역						
구 분	항 목	경상남도 거창군 읍·면									
일반 현황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읍·면									
	협의회대표	성 명				전화번호	( ) - -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 현황	총투자액 (만원)	구 분	내 역	일 자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주인 부담	기 타	
					자재지원	현금지원	시도비	시군비			
		최초사업비									
		시설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시설 현황	수원의종류	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									
	시설의유형	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									
	취수시설	보유시설	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집수정 1						심도 : m		
			집수정 2						심도 :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정수시설	보유시설	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소독설비									
		침 전 지									
여 과 지											
배 수 지											
송배수관로	구 분	송 수 관 로			배 수 관 로			관 종 별			
		관 종	직 경	연 장	관 종	직 경	연 장	총연장(m)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총 계			M			M	총계 : M				
급수 현황	계 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현 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제한 급수	1차		2차 :		3차 :		계 : 일간			
수질 검사	검사 시설	취 수 원	배 수 지	수도꼭지	검사기관	( 개항목)					
	합격 여부				검사일시						
개량 내역	개량 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 공 자	개 량 내 용					
수원 이전	이전 사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전 위치										

※ 시설폐지 시는 뒷면에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제7조 관련)

관리번호	거창군 제 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거	취수원부근	
	배수지부근	
그 밖에		

※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제7조 관련)

관리번호	거창군 제 호	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수원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내 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 여부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여부			

#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및 노후 수도시설 개·보수 비용

나. 관련조문

- 제4조(시설의 관리)⑤ 군수는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세출	국도비		486	480	480	480	480	2,406
	군비		1,261	1,250	1,250	1,250	1,250	6,261
	소계(a)		1,747	1,730	1,730	1,730	1,730	8,667
세입	국비		420	420	420	420	420	2,100
	도비		66	60	60	60	60	306
	소계(b)		486	480	480	480	480	2,406
총 비용(a-b)			1,261	1,250	1,250	1,250	1,250	6,261

### 3. 관련 의견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노후 수도시설 개보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찬 북

#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59
----------	-----------

제출일자	2013. 6. 28.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수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돗물 수질검사기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수도법」에 맞추어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반영함

- (1) 기능 : 수돗물 정기검사 및 공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수돗물 정기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안 제2조)
- (2) 위원 자격 : 수도관련 업무담당 소속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안 제3조)

나. 수돗물 수질검사기관 등 수질검사 관련 조항 정비함(안 제8조)

- (1) 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2)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함

(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0조,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 3,360천원 반영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4. 5. ~ 4. 2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군수(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 제4항 중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서기는 수질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촉된”을 “새로 위촉된”으로, “잔여”를 “남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6조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질병이나 기타”를 “질병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을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9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가지”를 “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거창군홈페이지”를 “군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제목 “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명기사항”을 “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포함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관리책임자를 실명으로 명기한다.”를 “관리책임자의 실명을 표기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성위원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 운영에----- -----.</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수원·정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결과 공표</li> <li>2. 상수원·정수의 질에 대한 문제점 및 수질향상 자문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문</li> <li>3. 상수원수 오염과 관련된 제반 감시 활동</li> <li>4. 기타 상수원·정수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li> </ol>	<p>제2조(기능)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li> <li>2. 군수(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li> <li>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li> </ol>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군의원, 언론인, 학계, 환경관련단체, 수도사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서기는 수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④ ----- -----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주사-----</p> <p>⑤ ----- ----- 새로 위촉된 ----- 남은 -----.</p>

현행	개정안
<p>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질병이나 기타</u>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li> <li>2. (생략)</li> <li>3. <u>기타</u>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li> </ol>	<p>제6조(위원의 해촉) ----- 각 호의 어느 하나 ----- 경우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질병 등의</u> -----</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u>그 밖에</u> -----</li> </ol>
<p>제8조(수질검사) ① (생략)          ② 수질검사 대상·건수·항목·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수질검사는 <u>수도사업소</u>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는 <u>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u>에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수질검사기관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p>	<p>제8조(수질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상하수도사업소 ----- .  <u>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u> ----- .</p>
<p>제9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공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공보</li> <li>2. 경상남도 내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신문</li> <li>3. <u>거창군홈페이지</u> 및 읍면 게시판</li> <li>4. <u>기타</u> 군민이 알 수 있는 적당한 방법 등</li> </ol>	<p>제9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 각 호의 어느 하나 ----- 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2. -----</li> <li>3. <u>군 홈페이지</u> -----</li> <li>4. <u>그 밖에</u> -----</li> </ol>
<p>제10조(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명기사항)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민들이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문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u>관리책임자를 실명으로 명기한다.</u></li> <li>2. ~ 3. (생략)</li> </ol>	<p>제10조(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포함사항) ----- 각 호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 <u>관리책임자의 실명을 표기한다.</u></li> <li>2. ~ 3 (현행과 같음)</li> </ol>

현행	개정안
<p>제11조(활동경비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위원회 참석수당, 수질검사비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 4.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찬 복